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7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과세표준·세율 조정 및 적 용기한 연장 등	2

I. 개요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97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3. 17.
- (3) 회 부 일 : 2025. 3.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일정한 조합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업무추진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절차를 생략하고, 비교적 저율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조합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과세표준·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등

가. 개요

□ 현행법 제72조는 특정 조합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세무조정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례를 규정한 것임.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세를 위하여 복잡한 세무조정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법인세 과세표준상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과세표준 20억 이하는 9%, 초과분은 12%)을 적용받는 혜택이 있음.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다만,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선택한 조합법인의 경우 통합투자세액 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감면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조합법인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조합법인의 경우 1998년 이전까지는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에 포함되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전부개정으로 대부분의 공공법인을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로 편입시키고, 조합법인에 대해서만 동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현재까지 적용기한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주요 개정연혁]

시행연도	개정내용
~1998	·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로 운영
1999	· 과세표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별도 세무조정 없음) · 세율: 12%
2001	·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세무조정 신설
2009	· 세율 인하: 12% → 9%
2013	· 세무조정 대상 확대: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액 + 업무무관 경비 + 과다경비 등 6개 항목
2015	· 세율구간 신설: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시 12%
2016	· 2016년까지 합병 시 신설(존속)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12%
2018	· 적용기한 3년 연장(2020년 말까지)
2021	· 적용기한 2년 연장(2022년 말까지)
2023	· 적용기한 3년 연장(2025년 말까지)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 조합법인 과세특례에 따라 2024년에는 총 3,173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에는 2,731억원, 2026년에는 2,791억원의 조세지출이 예상되고 있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451	2,964	3,636	3,271	3,347	4,291	5,113	3,173	2,731	2,791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나.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운영석의원안, 정부안)

현 행	운영석의원안	정부안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2조) ○ 대상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연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특례: 재무제표상 당기 순이익에서 기부금, 업무추진비 등을 세무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 과세표준 = 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계산한 금액 ○ 세율 - 과세표준 <u>20억원</u> 이하: 9% - 과세표준 <u>20억원</u> 초과: <u>12%</u> * 단, 2016. 12. 31. 이전 조합법인간 합병한 경우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u>12%</u> ○ 적용기한:	○ 저율과세 구간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세율 - 과세표준 <u>30억원</u> 이하: 9% - 과세표준 <u>30억원</u> 초과: 12% * 단, 2016. 12. 31. 이전 조합법인간 합병한 경우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12% ○ 적용기한: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 적용세율 인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u>15%</u> * 단, 2016. 12. 31. 이전 조합법인간 합병한 경우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u>15%</u> ○ 적용기한:

현 행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u>2025. 12. 31.</u>	<u>2028. 12. 31.</u> ○ 시 행 일: 2026. 1. 1.	<u>2028. 12. 31.</u> ○ 시 행 일: 2026. 1. 1. ○ 경 과 조 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율에 관하여는 종전규정 적용

* 윤영석의원안 2025. 8. 28. 발의(의안번호 12462),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 개정안은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의 과표구간 또는 세율을 조정 하려는 것으로,

윤영석의원안은 9%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2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이고,

정부안은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하려는 것임.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의 법인세 세율 비교]

일반법인		조합법인		조합법인 우대 폭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0억원 이하	9%	2억원 이하	-
2억원 ~ 200억원	19%			2억원 ~ 200억원	7~10%p
200억원 ~ 3,000억원	21%			200억원 ~ 3,000억원	10%p
3,000억원 초과	24%	20억원 초과	12%	3,000억원 초과	13%p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개정안별 비교]

현행법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0억원 이하	9%	20억원 이하	9%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u>12%</u>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u>9%</u>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u>15%</u>
30억원 초과	<u>12%</u>	30억원 초과	12%	30억원 초과	<u>15%</u>

□ 먼저 저율과세 구간을 확대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은 영세 조합법인의 고유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농협은 도농상생기금²⁾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 영농도우미 지원 등 농촌 복지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고, 수협은 어촌마을 의료봉사, 어업인 장학금 지급 등 해양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을 수행 중임.

또한, 새마을금고 역시 지역아동센터 후원 등 지역밀착형 복지에 기여하고 있고, 산림조합은 임도사업³⁾, 사방사업⁴⁾ 등 산림재해 예방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협 역시 사회적·금융적 취약계층에게 금융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은 농어민 환원사업 수행, 지역사회 의 자생력 및 복지 향상 기여 등과 같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영리법인보다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2) 도시 농·축협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총 7,98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농촌 농·축협의 경제사업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7,910억원을 지원하였음.

3) 임도는 산림보호, 산림사업의 효율성 및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림 내에 시설하는 도로로써 산림경영을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임. 산림조합은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시설함으로써 산림의 집약적·효율적인 경영기반을 확충하고, 시설된 임도 중 피해가 우려되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곳에 대해서는 구조개량과 보수작업을 통해 견고한 임도 유지를 위해 노력 중임.

4) 사방사업은 붕괴지, 붕괴 우려지에 대한 지반 안정작업을 시행하고 식생을 조성하여 집중호우시 토석류의 유출을 막고 산사태를 예방함으로써 산림을 보호하고 산지 주변의 가옥과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임.

□ 다만, 저율과세 구간 확대에 대해서는 조합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 간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정 의무 완화와 더불어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현행 제도 하에서도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조합법인의 실효세율은 8.3% 수준으로 일반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인 12.5%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과세표준 20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을 인상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축소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첫째,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대형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대형 조합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세 최고세율(24%)의 절반인 12%의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제혜택의 규모가 크고, 2023년 기준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20억원 이하의 경우 실효세율이 8.7%이지만, 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8.3%로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남.⁵⁾

5)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5. 9.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익금액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2023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금고	산림 조합	생협 조합	기타
전체	8.8	9.3	9.3	8.2	8.8	9.0	8.5	8.9
0~20억원 이하	8.7	9.0	-	8.5	8.5	-	9.0	8.9
20~100억원 이하	8.3	8.9	-	8.0	8.6	9.0	8.0	8.3
100억원 초과	9.3	9.3	9.3	8.6	9.7	9.0	9.0	9.3

자료: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5. 9.

동 조세특례에 대한 2025년 심층평가⁶⁾에 따르면, 현행 조합법인 과세특례 제도는 조합의 규모에 따라 혜택의 크기가 달라지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하여 규모가 큰 조합일수록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리는 경향이 있고, 이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괴리가 있으므로 일정 자산 또는 이익 규모를 초과하는 대형조합에 대해 특례 적용을 제한하거나 감면 폭을 축소하여 역진적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음.

둘째, 최근 동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451	2,964	3,636	3,271	3,347	4,291	5,113	3,173	2,731	2,791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6)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5. 9.

동 조세특례의 지출규모 추이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액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2023년 조세지출 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농협과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기인하는데, 이는 2022년 기준금리 인상⁷⁾에 따라 여신사업 수익성 개선으로 인하여 2023년 신고분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새마을금고의 PF대출 등 고위험 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수익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임.⁸⁾

동 조세특례의 취지가 영리법인에 비해 조직화 수준이 낮고 규모가 영세한 조합법인에게 복잡한 세무조정 과정을 면제하고 일반세율 대비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세한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되 수익성이 큰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규모를 일부 축소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참고로 동 조세특례에 대한 2025년 심층평가⁹⁾에 따르면 효과성 분석 결과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높여도 세수저항이 크지 않았고, 수익성 및 성장성 하락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조세특례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조합법인의 매출지표는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음.

□ 다만, 개정안과 같이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축소할 경우 앞서 제시한 조합법인의 공익사업과 고유 역할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7) 기준금리(%): ('22. 1.) 1.25 ('22. 4.) 1.50 ('22. 5.) 1.75 ('22. 7.) 2.25 ('22. 8.) 2.50 ('22. 10.) 3.00 ('22. 11.) 3.25

8) 새마을금고 당기순이익 (귀속연도 기준): ('21년) 1조 1,152억원 ('22년) 1조 5,573억원 ('23년) 860억원

9)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5. 9.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는 부실 조합을 정리하고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합병 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조합간 합병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¹⁰⁾ 20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인상 시 정책적 지원을 받아 합병한 조합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책 간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10) 합병에 따른 농축협 수 감소 현황(출처: 농협중앙회): ('61년) 21,042개 → ('68년) 16,089개 → ('73년) 1,549개 → ('88년) 1,463개 → ('99년) 1,132개 → ('10년) 1,171개 → ('17년) 1,131개 → ('24년) 1,111개

다. 적용기한 연장(이만희의원안, 주철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이양수의의원안, 이병진의의원안(2), 박희승의원안, 송옥주의의원안, 신영대의의원안, 최은석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윤영석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정희용의원안, 김선교의원안, 임이자의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2조) ○ 대상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 연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특례: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 업무추진비 등을 세무조정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 과세표준 =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 수익사업 관련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을 계산한 금액 ○ 세율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12% * 단, 2016. 12. 31. 이전 조합법인간 합병한 경우 과세표준 40억원 이하 9%, 40억원 초과 12%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7. 12. 31.(서영교의원안)</u> <u>2028. 12. 31.(이만희의원안, 주철현의원안, 이양수의의원안, 이병진의의원안(2), 송옥주의의원안, 신영대의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u>

현 행	개정안
	<u>의원안, 정부안, 임이자의원안</u> <u>2029. 12. 31.(박성훈의원안, 김선교의원안)</u> <u>2030. 12. 31.(서삼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박희승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 정희용의원안)</u> <u>2031. 12. 31.(서천호의원안)</u> <u>2035. 12. 31.(문대림의원안)</u> ○ 시행일: 공포한 날(이만희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신영대의의원안, 김선교의원안) 2026. 1. 1.(주철현의원안, 문대림의원안, 서삼석의원안, 이양수의의원안, 이병진의의원안(2), 박희승의원안, 최은석의원안, 박성훈의원안, 윤영석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임호선의의원안, 정부안, 서영교의원안, 서천호의원안, 정희용의원안, 임이자의원안)

* 이만희의원안 2024. 12. 2. 발의(의안번호 6093), 주철현의원안 2025. 1. 23. 발의(의안번호 7736), 윤준병의원안 2025. 3. 10. 발의(의안번호 8766), 문대림의원안 2025. 3. 17. 발의(의안번호 8975), 서삼석의원안 2025. 3. 21. 발의(의안번호 9223), 이양수의의원안 2025. 6. 5. 발의(의안번호 10673), 이병진의의원안 2025. 6. 26. 발의(의안번호 11102), 이병진의의원안 2025. 6. 27.(의안번호 11114), 박희승의원안 2025. 7. 17. 발의(의안번호 11539), 송옥주의의원안 2025. 7. 28. 발의(의안번호 11783), 신영대의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84), 최은석의원안 2025. 8. 11. 발의(의안번호 12093), 박성훈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308), 윤영석의원안 2025. 8. 28. 발의(의안번호 12462), 박상웅의원안 2025. 9. 1. 발의(의안번호 12555), 임호선의의원안 2025. 9. 2. 발의(의안번호 12620),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서영교의원안 2025. 9. 8. 발의(의안번호 12789), 서천호의원안 2025. 9. 17. 발의(의안번호 13052), 정희용의원안 2025. 9. 24. 발의(의안번호 13209), 김선교의원안 2025. 9. 26. 발의(의안번호 13327), 임이자의원안 2025. 10. 15. 발의(의안번호 13610)

☐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도래 예정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년(서영교의원안), 3년(이만희의원안, 주철현의원안, 이양수의의원안, 이병진의의원안(2), 송옥주의의원안, 신영대의의원안, 최은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정부안, 임이자의원안), 4년(박성훈의원안, 김선교의원안), 5년(서삼석의원안, 윤준병의원안, 박희승의원안,

박상웅의원안, 임호선의원안, 정희용의원안), 6년(서천호의원안) 또는 10년(문대림의원안)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영세한 개별 조합법인은 전문적인 세법지식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법인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 절차를 면제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지속적으로 경감해줄 필요가 있음.

둘째, 국내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법인에 대하여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특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동 특례에 대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단계적인 세무조정 항목 확대 등을 통해 지원수준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¹¹⁾ 2020년 심층평가에서는 직접적인 조합원 지원제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¹²⁾.

11) 기획재정부,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IV)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p. 7-8

12) 기획재정부,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VI)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p. 12-14

202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공익적 목적을 전제로 하지만 실제 조합원의 실익 증가나 공익 기여로의 연결고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 사항 추가, 대형조합 세율 인상, 공익활동 실적 등 공제요건 신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¹³⁾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

13) 기획재정부,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p.9, p126-127